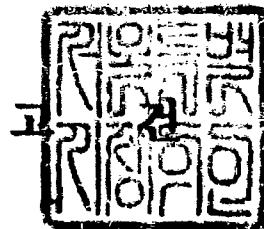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

증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의 개정(98.4.25)에 및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월간 최저거래실적이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조정 (안 제22조제2항)

- 1개월 미달 : 주의 ⇒ 1개월 무실적 : 주의
- 2개월 연속미달 : 경고 ⇒ 2개월 연속무실적 : 경고
- 3개월 연속미달 : 업무정지 15일 ⇒ 분기중 평균거래실적이  
월간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월)
- 3개월 연속무실적 : 허가취소 ⇒ 현행과 동일

나. 행정처분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제22조제3항에 서울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이 조치할 수 있는 항목 신설

- 1개월 무 실 적 : 주의
- 2개월 연속무실적 : 경고
- 분기중 평균거래실적이 월간최저거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1차위반 : 경고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③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하였음

다. 기타 : 1998.6.2 업무규정 개정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 받았음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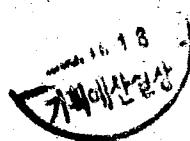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중도매인이”를 “분기별로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여”로, “단, 동일처벌이 최근 1년간 3회째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 처분할 수 있다.”를 “단, 위반행위일을 기준하여 최근 1년 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상위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조같은항 제1호중 “1개월 미달”을 “1개월 무실적”으로, 제2호중 “2개월 연속 미달”을 “2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기중 평균거래실적이 월간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월)

③ 제2항의 규정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고조치는 사장이 할 수 있다.



부 칙

이 업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최저거래 기준) ① 도매시장 충도매인의 월 최저거래기준은 400가마(가마당 80kg, 법인은 2천가마)로 한다.	제22조(최저거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충도매인이 전항에서 정한 최저거래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의·경고·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단, 통일처벌이 최대 1년간 3회법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 처분할 수 있다.	② 분기별로 충도매인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단, 위반행위를 기준하여 최근 1년안에 통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상위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1개월 미달 : 주의 2. 2개월 연속미달 : 경고 3. 3개월 연속미달 : 업무정지 15일  4. 3개월 연속무실적 : 허가취소	1. 1개월 무실적 : 주의 2. 2개월 연속무실적 : 경고 3. 분기별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월) 4.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고조치는 사장이 할수 있다.